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	-----

제출년월일 : 2023.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강원도 산림소득과-13880(2022.09.23.)호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국·공립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가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해 2011.07.15. 조례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5.05.15. 및 2022.04.01. 일부 개정한 이후 시설사용료 및 입장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 기존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을 세분화시켜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리자 예약 신설
- 나.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2 개정
- 다.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신설
- 라.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반환기준 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평창군 공고 제2023-1152(2023. 07. 20. ~ 2023. 08. 09.)]
- 2) 규제심사 : 비규제[기획실-2003 (2023.07.17.)]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없음[기획실-2003 (2023.07.17.)]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할 사항 없음[가족복지과-3382 (2023.07.19.)]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실-3758(2023.08.14.)]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3973(2023.08.18.)]

##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④ 제3항 규정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입장료료 등의 반환)**

②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lt;2015. 05. 15 개정&gt;</p> <p>1. 면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민,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 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 ----- ----- ----- -----</p> <p>1.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제2항-----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 규정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u></p> <p>제13조(관리자 예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p>

제13조 ~ 제19조 (생략)

제20조 · 제21조 (생략)

제22조 ~ 제24조 (생략)

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 ~ 제20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21조 · 제22조 (현행 제20조 및 제21조와 같음)

제23조 ~ 제25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주차료	경차	1,500	2,000	2,000	1대/1일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2,000	3,000	3,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3,000	4,000	4,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4,000	5,000	5,000	
야영장		10,000	10,000	10,000	1조/1일
산림문화 휴양관	강당 184m <sup>2</sup>	70,000	100,000	10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숙박 시설	숲속체험관 (자작나무)	60,000	100,000	100,000	1일/1실
	숲속의 집 (산토끼, 단풍나무)	70,000	110,000	110,000	1일/1실
	숲속의 집 (태기산)	90,000	150,000	150,000	1일/1실
다목적 운동장	1시간	15,000	20,000	20,000	숙박시설 이용객은 무료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5:00부터 다음일 (check-out) 11: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3:3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막 공휴일의 전일까지)**을 말한다.
3. **성수기는 매년 7. 1 ~ 8. 31까지**,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미만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하 지체는 50%, 4시간 초과 지체는 1일 이용료 추가징수**
5. 숙박시설의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숲속체험관(자작나무) : 4~6인(성인 4, 청소년이하 2)**
  - **숲속의집(산토끼, 단풍나무, 태기산) : 4인**

6.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6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및 명예군민	1.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2.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일 이상의 단체이용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7. 침구는 4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시 추가요금( 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8. 야영시설만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제12조 관련)

가. 입장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나. 주차장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5시간 이내	5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다. 숙박시설 및 산림휴양문화관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중 제26호의 숙박업 기준 적용)

내 용	환불기준		비 고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 성수기 주중		※유의사항 ● 예약 당일 24:00 까지 (사용일 전날 예약시 2시간 이내) 결제하여야 함. ● 환불시 카드수수료, 전자이체수수료를 공제함  ※위약금 미 부과 ●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9~7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6~5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4~3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당일 오전 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당일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9~7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6~5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4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4~3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6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부터 당일 오전 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90%공제후 환급		

	<p>○ 비수기 주중</p> <table border="1"> <tr> <td>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td> <td>전액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td> <td>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td> <td>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td> </tr> </table> <p>○ 비수기 주말</p> <table border="1"> <tr> <td>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td> <td>전액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td> <td>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td> </tr> <tr> <td>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td> <td>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td> </tr> </table>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p>●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p>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까지 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p>사업자과실인 경우</p>	<p>○ 성수기 주중</p> <table border="1"> <tr> <td>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td> <td>전액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5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td> <td>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td> </tr> </table> <p>○ 성수기 주말</p> <table border="1"> <tr> <td>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td> <td>전액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4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6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td> <td>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td> </tr> </table> <p>○ 비수기 주중</p> <table border="1"> <tr> <td>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td> <td>전액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당일 통보</td> <td>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able>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5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4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6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p>객실 사용불가를 사전에 안내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일 경우 예약금만 전액 환불함</p>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5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4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6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p>○ 비수기 주말</p> <table border="1"> <tr> <td>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td> <td>전액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td> <td>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r> <td>사용예정일 당일 통보</td> <td>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td> </tr> </table>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하여 취소하는 경우	<p>예약금 전액 환불</p> <p>※ 객실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p>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 관계법령 발췌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

대 상 품 목

번호	업 종	품 종	해 당 품 목
26	숙박업	○숙박업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별표 II>

품 목 별 해 결 기 준

26. 숙박업(1개 업종)

숙박업 (1-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성수기: 7월~8월 * 비수기: 성수기제외 기간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숙박업 (2-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2)	성수기	주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li> <li>·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li> <li>·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li> <li>-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li> <li>·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li> <li>○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li> <li>○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li> <li>○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li> <li>○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li> </ul>					
3)	비수기	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li> <li>·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li> <li>-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li> <li>·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li> <li>○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li> <li>○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li> </ul>					
4)	비수기	주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li> <li>·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li> <li>-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li> <li>·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li> <li>○ 계약금 환급</li> <li>○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li> <li>○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li> <li>○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li> </ul>					

숙박업 (3-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 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0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0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0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0	위약금	없이	계약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계약내용 변경 시			0	위약금	없이	계약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0	위약금	없이	계약	* 사업자는 이미 지급 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계약내용 변경 시			0	위약금	50% 감경			
	· 계약해제 시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 강 원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개정 권고

1.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3602(2022.9.20.)호 관련입니다.
2. 2022년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운영실태(숲나들e 포함)"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3. 이에 공립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하오니 <붙임 1>의 표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시·군별 해당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조례 개정 계획을 <붙임 2> 서식에 따라 2022.9.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원 지적사항(요약) 》

- 공립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가 숲나들e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 등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

- 붙임 1.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1부.  
2. 공립자연휴양림 조례개정 계획(서식) 1부. 끝.

## 강 원 도 지 사

수신자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장(관리운영과장),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산림과장), 원주시장(산림과장), 강릉시장(산림과장), 태백시장(공원녹지과장), 홍천군수(산림과장), 강릉군수(산림녹지과장), 평창군수(산림과장), 정선군수(산림과장), 철원군수(녹색성장과장), 양구군수(생태산림과장), 인제군수(산림자원과장), 양양군수(산림녹지과장)

주무관 양승호                      산림복지팀장                      산림소득과장                      전결 2022. 9. 23.                      김형진

협조자

시행    산림소득과-13880                      (2022. 9. 23.)                      접수    산림과-16527                      (2022. 9. 23.)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 <http://provin.gangwon.kr>

전화번호 033-249-3127    팩스번호 033-249-4044    / [ysh6654@korea.kr](mailto:ysh6654@korea.kr)                      / 비공개(5)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비용추계서

[별지 제2호 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산림과장 이 성 모
연락처	(033) 330 - 2450